

##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,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10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### □ 교섭요구 사실

-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
  -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(공무직)
- [대표자 : 지부장 이종열]
- 교섭요구 일자 : 2019. 1. 8.

### □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참여

- 참여방법 :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, 단체교섭요구서 제출(2019년 1월 17일 18:00한)
- 제출서류 : 단체교섭요구서,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, 단체교섭요구사항 각 1부
- 제출방법 : 직접제출, 우편, 팩스 중 택일(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)
- 제출처 :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

[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), Fax 032-560-4106)]

### □ 참고사항

- 교섭요구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절차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(☎032-560-410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